

## 내부회계관리제도 뉴스레터

Jan 29, 2021

### In this Issue

- I. Law & Regulation
- II. Articles
- III. FAQ
- IV. News
- V. Events

### Key Contacts

삼성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TFT 는 회계제도의 변혁에 대한 대응과 내부통제 효과성 제고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 TFT 는 K-SOX Newsletter 를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뉴스기사, 법제도 동향, 전문가 보고서, Q&A 등을 제공하고, 더불어 교육 및 강연 등 이벤트 소개를 통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여 추진하시는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K-SOX'는 Korea Sarbanes-Oxley Act 의 약자로, 한국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미합니다. 본문의 제목을 클릭하여 관련 보도자료, 보고서 등을 다운받거나 뉴스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I. Law & Regulation

최근의 법률 제·개정 내용 및 감독당국의 감독방향과 실무지침에 관한 정보

※ 제목 클릭 시, 원본 자료 다운로드 가능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FAQ (2021.1.)

(2021.1.28, 한국공인회계사회)

- 이 FAQ 는 감사기준서 1100(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사) 등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1본부가 작성
- 이 FAQ 에 포함된 내용은 회계감사기준의 일부가 아니고 회계감사기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 회계감사기준 해석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회계감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회계감사실무지침 등을 대신할 수 없음
- 따라서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FAQ 를 참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KPMG Comment

- 기존 FAQ 대비 추가된 내용 중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을 소개함

**17. 보고기간말 재무보고 프로세스(결산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결산 항목을 대부분 결산 체크리스트에 포함하고 결산 체크리스트를 작성, 검토, 승인하는 통제활동을 설계, 운영하는 경우 미비점에 해당하는지요?**

결산 체크리스트의 관리와 작성은 결산 절차에 대한 완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효과적인 통제활동이나 결산 체크리스트만으로 각 항목에 대한 통제활동이 충분하게 수행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의적인 회계추정이나 특수관계자 거래 등과 같이 위험이 높은 항목에 대한 통제는 결산 체크리스트에 통합하기보다는 별도의 통제로 구분하여 설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략)

**18. 주식 공시사항의 왜곡표시 위험에 대처하는 통제로 공시사항 점검표를 작성하여 공시사항의 완전성을 점검하고 각 주식 항목에 공시된 금액과 재무제표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 확인하는 통제만을 설계, 운영하는 경우 미비점에 해당하는지요?**

해당 공시 항목의 왜곡표시 위험이 단순히 재무제표 금액과 주식 공시 금액이 불일치할 여부에만 있다면 공시사항 점검표를 작성하여 공시사항의 완전성을 점검하고 각 주식 항목에 공시된 금액과 재무제표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대조 확인하는 통제로도 해당 위험에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 내용에 재무제표 금액을 특정 기준에 따라 분류한 내용이나 특수관계자 거래와 같이 추가적인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세부 내역 확인에 대한 통제를 별도로 식별하고 테스트해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시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는 통제가 다른 거래 프로세스에서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2020년 결산 시 꼭 확인하세요”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2020.12.31, 금융감독원)

## 보도자료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2020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유의해야 할 7가지 사항을 안내함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에 선제적 대응
  -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 법정기한 내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
  -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0년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철저한 대비 필요** → 아래 상세 내용
  - 2020년부터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된 핵심감사사항을 감사보고서에 충실히 기재
  -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관련 회계처리 시 세심한 주의
  - 회계오류 예방 노력 및 과거 오류 발견 시 신속 정정
  - 금감원이 게시한 '회계기준을 잘 몰라서 지적 받는' 회계오류 예방 필요
-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0년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철저한 대비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위한 충분하고 적극적인 인력 확보 및 관련 교육 확대를 통해 투입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유의사항

- ✓ **(회사)**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경영진의 충분한 관심과 함께 주요 취약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
- ✓ **(외부감사인)** 모범규준, 감사기준, 감사 FAQ 등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조서화할 필요

### KPMG Comment

- 2020년 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대상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원년 2019년의 경우, 초기 계도 위주의 감독 기조였으나 향후 감독 강화가 예상됨
  - 주기적 지정제의 영향, 자산총액 2조원 이상 회사에 대한 감사경험의 축적, 향후 감독당국의 감독 방향 전환으로, 외부감사인이 보다 철저히 감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상장회사는 2조원 이상 회사 대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고 경영진의 관심이 필요함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을 마련하여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

(2021.1.11,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 [참고] 미래현금흐름 추정시, **명백히 비합리적인 가정에** 해당하는 사례

- 코로나 19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5년 초과 기간의 **재무예측(예산)**을 기초로 추정하였으나, 5년 초과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거나, 그 구체적 근거를 공시하지 않은 경우**
- 자산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매출 증가를 추정하여 성장률을 산정하는 경우**
- **충분한 내·외부증거가 존재함에도, 불충분한 증거만 사용하여**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한 경우 등

2. **할인율 추정시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합니다.**

[참고] 할인을 추정시, 코로나19의 비정상적 영향을 조정하는 방법 예시

- 코로나 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수익률의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시점이나 1년 평균의 시장 위험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고 보다 장기 관측기간의 평균값을 적용**
- 코로나 19 전·후로 현금흐름 변화가 크지 않은 기업을 평가하는 경우, **베타( $\beta$ )의 비정상적 변동으로 인한 할인율 왜곡을 막기 위해 보다 장기 관측기간(예: 1년 초과기간)의 베타 평균값을 적용**

3.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 및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충분히 공시**해야하며, **외부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인은 현재 이용가능한 정보와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Due Process)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회계 결산 및 감사관련 감독방안**

(2020.12.14,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요내용**

- 코로나19 관련 감독당국 및 유관기관의 주요 대응내용
  - 감사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허용 및 행정제재 면제(2020.3)
  - K-IFRS 제 1109 호(금융상품) 손상 규정 적용 시 유의사항 안내(2020.4)
  - K-IFRS 제 1116 호(리스) 회계기준 개정(2020.7)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운영 관련 실태조사 실시(2020.9)** → 아래 상세 내용
  - 종속기업 범위 개정안 적용 유예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추진(2020.11 월)
  - 감사인 선임·지정 등 관련 언택트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 개최(2020.4, 2020.8, 2020.11)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 운영 관련 실태조사 실시(2020.9)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기업들이 준비과정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시스템 구축·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실태조사 및 처리방안을 유관기관과 협의
  - 외부감사법 개정(2018.11.1 시행)으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와 관련하여 감독방향에 대한 시장의 불안감 존재  
→ **초기 제도 위주 감리 등의 내용을 담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여 제시 예정(2021년 1분기)**
  - 코로나 19 불확실성에 따른 결산 수정사항이 다수 발생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으로 평가될 우려\* 존재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서 '최초 재무제표에 미반영된 수정사항'을 중요 취약점으로 예시하고 있어, 해외자회사 평가 등의 결산 수정사항을 기계적으로 중요 취약점으로 분류할 우려

→ **코로나19 관련 결산 수정사항에 대한 취약점 평가 실무가이드(FAQ)를 제공**

**[참고]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FAQ) 주요 내용**

- ✓ 외부감사인의 격리조치 등으로 재고실사에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 실시간 화상중계기술을 활용하여 재고실사를 관찰하는 등의 대체적 절차 수행
- ✓ 외부감사인의 국외 방문이 불가한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한 적격 회계법인을 재고자산 실사 입회, 종속기업 감사 등에 활용하는 등 대체적 절차 수행
- ✓ 외부감사인이 원본문서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 사본문서가 형식·내용 측면에서 원본문서에 충실한지 결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 수행

- 손상평가, 총당부채와 같이 회계처리 상 복잡한 추정이나 판단을 요하거나 불확실성이 높은 계정과목에 대한 별도의 검토통제 설계 및 운영 필요
  - 코로나 19로 인해 미래현금흐름과 할인율의 변동성이 커졌으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 및 판단과 사전적인 대비 필요

[Back to top](#)

## II. Article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KPMG의 보고서, 국내외의 주요 연구 소개

### 「감사위원회 저널」 17호



- ACI Insight
  -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Check Point
  - 사전 재무제표 감독 Check Point
- Case Study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고려사항
- Beyond Data
  - 금융사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와 후보군 마련 현황
- Law & Regulation
  - 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 2025년부터 대기업 ESG 공시 의무화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 「한미 내부회계관리제도 비교와 시사점」 Vol.2



- 국내와 미국 간 비적정 의견 사유의 분포가 확연한 차이를 보임
- 비적정 의견 사유 중 한국은 '범위 제한', 미국은 '정보기술(IT) 통제 미흡' 대폭 증가
- 재무제표 작성능력으로 인한 비적정 의견 사유가 가장 많은데, 이는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감사(위원회) 산하 내부감사부서에 의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적극 고려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삼정 KPMG K SOX 전문조직

[Back to top](#)

## III. FAQ

新외부감사법 등 강화된 법규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감독당국·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등의 유관기관을 통해 자주 질의된 이슈를 답변 및 관련 법규와 함께 정리

### 내부회계관리자 변경 시 승인 등 업무 관련 질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21.1.6)

#### Q

- 2020년 회계연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담당하였던 내부회계관리자(상근이사)에 대해 2021년 1월 1일자로 대표이사 선임 인사발령이 공고되었고, 2월 중 이사회 승인이 예정되어 있음
- 2021년 현재 신규로 지정된 차기 내부회계관리자가 2020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를 승인하여도 되는지?

#### A

- 원칙적으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는 연중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그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한 前任 내부회계관리자가 서명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퇴임 등의 사유로 전임자가 서명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新任 내부회계관리자가 관련 업무의 내용을 이해하고 전임자의 평가결과를 인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 서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 참고로, 사업보고서 첨부서류에 포함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는 2020 년말 내부회계관리자(질의한 회사의 경우, 현 대표이사)를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 기재하고 표 하단에 주석으로 변경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대표이사 평가보고서의 경우에도 동일)

## 관련 법규

- **외부감사법 제 8 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③** 회사의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며, 이를 담당하는 상근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명을 내부회계관리자(이하 "내부회계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Back to top](#)

## IV. New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

※ 제목 클릭 시, 기사 원문 확인 가능

### 국내 동향

- **심정훈 삼정 KPMG 상무 “기업 감사위원회 책임은 커졌는데 여건은 열악”**  
[마켓인사이트, 2020.12.24]
  -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본격화되면서 감사위원회의 책임이 확대됨
  - 미국의 대기업 감사위원은 연간 1,000시간을 업무에 할애하기도 하나, 국내 비상근 감사위원들은 회의 전 자료를 검토하기에도 시간이 부족
  - 국내 감사위원회의 경우 지원조직도 미흡
  - 감사위원이 내부감사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필요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회사에 요구해야 함
- **삼정 KPMG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강화로 비적정 의견 받는 기업 증가할 것”**  
[이투데이, 2020.12.23]
  - 국내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첫해인 2019년 사업연도에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비중이 2.4% 수준인 가운데, 향후 감사 업무 강화로 비적정 의견을 받는 기업 비중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원년에 15.9%의 기업이 비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이후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3년 PCAOB 의 감독 강화 이후 비적정 비중이 다시 증가
  - 국내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 사유 중 내부통제 설계 미비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범위 제한’이 가장 높은 비중(32.6%)을 차지
  - 미국에서는 ‘범위 제한’ 사유로 인한 비적정 사례는 거의 없고,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21.2%), ‘정보기술(IT) 통제 미흡’(19.6%), ‘업무 분담 미흡’(12.6%)의 비중이 높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주의보...거래소, 코스닥기업 적극 지원한다** [한국경제, 2020.12.1]
  -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결과를 주주총회에 의무 보고해야하는 기업의 범위는 지난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에서 올해 5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됨
  - 관련 업무를 처음 시행하는 중견기업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중 코스닥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실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해외 동향

- **Why a Sarbanes-Oxley update is needed to protect our financial sector from hackers** [THE HILL, 2020.12.28]
  - 사이버 보안 리스크는 기업경영을 좌우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부상 중임

- 최근 미국에서는 사베인스-옥슬리법에 상장법인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 감독과 관련 보고 의무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PCAOB to shake up inspections in 2021 [Accounting Today, 2020.12.8]**
  -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2021년 감리 시 COVID-19으로 인한 제약요건 하에서 외부감사인의 문서화 절차 등을 면밀히 감독할 것이라 예고
  - COVID-19의 영향을 많이 받은 업종(교통, 엔터테인먼트, 숙박, 제조, 유통 등)의 외부감사 절차 및 결과를 특히 심도 있게 살펴볼 예정
- **Why the best critical audit matter disclosures use entity-specific info [Journal of Accountancy, 2020.12.9]**
  - PCAOB 관계자는 AICPA 컨퍼런스에서 외부감사인이 핵심감사사항(Critical Audit Matter, CAM)을 재무보고 절차를 고도화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발언
  - 표준화 또는 정형화된 정보를 과다하게 제공하기 보다는 다양한 관점의 추정과 판단에 근거한 영향 분석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유용함을 강조

[Back to top](#)

## V. Events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세미나, 포럼, 교육 프로그램 등 행사 소개

### 삼성 KPMG 제4회 K SOX Webinar (상반기 예정)

- 2~3월 발표 예정인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모범규준 적용기법'의 소개
- 인적·물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이슈별 실용적 대안 제시
- 5~10여 개 주제로 각 10~15분 세션 제공
- 프로그램 (안)

세션 시간(분)	주제
"10	인사말씀
"20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K SOX 의 이해
"15	2021 K SOX 감사결과 및 시사점
"15	K SOX 법제도 환경 대응 "중견·중소기업 관점"
"15	K SOX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15	IT 통제 구축 및 운영
"15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15	통제최적화
"15	재무제표 직접작성능력 강화
"15	Wrap-up
"10	맺음말씀

[Back to top](#)

※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

### 삼성 KPMG 온라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과정 Launch (상반기 예정)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와 주요 동향,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평가 실무 Tip 등을 주제로 하여 외부감사법령 상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이수를 지원
- 교육 프로그램 (안)

구분	Topic
입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와 주요 동향</li> <li>•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준비와 대응방향</li> <li>•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와 평가 개관</li> <li>• IT 통제에 대한 이해</li> </ul>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서 이해</li> <li>• 전사수준통제 구축 및 운영 실무</li> <li>• 프로세스 수준 구축 및 운영 실무</li> <li>• IT 일반통제와 응용통제의 실무 이해</li> <li>•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운영실태 보고 실무</li> </ul>

[Back to top](#)

※ 교육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

## Key Contacts



**한은섭 대표**

삼정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신장훈 부대표**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김유경 전무**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문조직 부Leader  
Leader

- 신장훈 부대표**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 위승훈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 변영훈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 조원덕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 허세봉 부대표** 품질관리 담당
- 염승훈 부대표**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 최재범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 권영민 부대표** 금융 산업 부문 담당
- 한상일 부대표**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 황재남 부대표**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 김유경 전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 심정훈 상무**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리스크 컨설팅
- 이종우 전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 이주한 전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 정 현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 신광근 상무** 전산감사, 정보 리스크 관리 담당
- 전현호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 조정래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 지동현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 황구철 상무** 소비재 산업 부문 담당
- 윤주현 상무** 전자정보통신, 엔터테인먼트 산업 부문
- 박상욱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 최재혁 상무** 금융 산업 부문 담당
- 김연정 상무** 철강, 에너지, 자동차 산업 부문 담당
- 김봉한 상무** Infrastructure, 정부, 헬스케어 부문

[Privacy](#) | [Legal](#)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